문서번호	총무과-106517
결재일자	2015.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0353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승산	김기석	최근수	정찬모	김경호	12/17 김기동
협 조	의회법무팀장 신수일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진구
GWANGJIN-GU

행 정 관 리 국

(총 무 과)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Ⅰ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지방공무원의 정원)
2.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및 특례지침(행자부 예규)
3. 2015년도 전직시험 추진계획(총무과-12031호, 2015.6.19.)
   ↳ 2015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명단통보 및 임용절차 안내 (시 인사과-33534호, '15.12.1.)

Ⅱ 개정사유

관리운영직군 대상, 2015년 전직시험 결과(합격자 수) 및 퇴직자(자연감소) 정원분을 행정·기술직군 전직예정직렬 정원에 반영하고, 기술직군 전직예정직렬의 계급별 초과현원 해소 및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표기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효율적 정원관리 도모

Ⅲ 개정내용 : 정원규칙 제2조(직렬·직급별 정원) 별표 개정

1. 주요골자

가. 총정원 증원 : 1,149명 【변동없음】

나.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5명) 정원분을 전직예정직렬 정원으로 조정

1) 조정기준(특례지침)

구 분	관리운영직군 정원 (전직시험 합격자)	전직 ▶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 정원 (전직예정직렬)
정원조정	현직급의 정원 감원 (단, 근속승진자는 전직급 정원 감원)		합격자의 현재계급 고려, 그에 해당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으로 증원

2)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5명(필기운영7급 1, 필기운영8급 3, 전기운영8급 1)

나) 대상별 조정내역

필기운영	4명(8급 1명, 9급 3명) 감원	▶	행정	4명(7급 1명, 8급 3명) 증원
전기운영	1명(8급 1명) 감원	▶	공업(전기)	1명(8급 1명) 증원

- **필기운영 7급** 1명(근속 3회)
  · 필기운영 9급 1명 감원 → 행정 7급 1명 증원
- **필기운영 8급** 3명(2명 각 근속 1회)
  · 필기운영 8급 1명 감원 → 행정 8급 1명 증원
  · 필기운영 9급 2명 감원 → 행정 8급 2명 증원
- **전기운영 8급** 1명
  · 전기운영 8급 1명 감원 → 행정 7급 1명 증원

다.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퇴직) 정원분(1명)을 신규임용 예정직렬에 반영

1) 조정기준(특례지침)

구 분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	▶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 정원 (신규임용예정직렬)
정원조정	현직급의 정원 감원 (단, 근속승진자는 전직급 정원 감원)		신규임용 예정직급의 정원으로 증원

2)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1명(필기운영7급 1, 근속)

나) 조정내역

필기운영	8급 1명 감원	▶	행정	9급 1명 증원

라. 기술직군 전직대상직렬의 계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조정

1) 전직대상직렬 정·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근속)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업(전기)	16	15	3	4	5	9	6	2	2	0
공업(기계)	14	12	3	4	4	6(1)	5	1	2	1

2) 조정기준(특례지침) : 초과현원인 상태로 전직임용한 경우 정·현원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 ※ 전직자 퇴직 시엔 정원 재조정

3)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5명(전기6급 1, 전기7급 4, 기계7급 1)

나) 대상별 조정내역

공업(전기)	5명(9급 1명, 8급 4명) 감원	▶	5명(6급 1명, 7급 4명) 증원
공업(기계)	1명(8급) 감원	▶	1명(7급) 증원

※ 공업(기계) 6급 정·현원 차이분(△1)은 현원감소 예정분('17.1.1.字 공로연수 2명)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마.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표기 표준에 맞게 정비

1) 표기표준 근거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1항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5호 및 제30조(정원의 규정) 제3항

2) 정비내용

가) 정원표 직렬표기 순서를 '임용령 직급표' 의 '직렬표기 순서' 에 맞게 정비

표기순서	[행정직군] 행정 → 세무 → 전산 → 사회복지 → 속기 → 방호 [기술직군] 공업 → 농업 → 녹지 → 수의 → 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의무 → 약무 → 간호 → 보건진료 → 환경 → 시설 → 방재안전 → 방송통신 → 위생 → 시설관리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 → 전기운영 → 기계운영 → 사무운영

나) 직렬이 아닌 '일반 임기제' 표기 삭제 → 결원대상 직렬로 재조정

현행	행정·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치과의사) 행정 또는 임기제(감사, 법무소송, 학예연구, 프로듀서, 안보홍보요원, 아나운서, 사진촬영, 기록물관리, 외국인주민)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의사, 한방의사)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식품위생 또는 임기제(영양사)	▶	조정	행정 또는 의무 의무 행정 보건진료 시설 의료기술 식품위생

- 임기제공무원 정원분 별도 관리

> 정원 규정 제22조제1항5호
> -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임기제 '교통전문' 분야 대상직렬을 '행정직' 에서 '시설직' 으로 변경
  · 변경사유 : 해당분야 업무성격 및 자치구 공통기준에 맞게 조정

2. 정원조정(안) 세부내역 :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참조

Ⅳ 참고사항

1. 예산조치 및 합의 : 별도조치 및 합의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15. 12. 17. ~ 2016. 1. 6.(20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리운영직군 대상, 2015년 전직시험 결과(합격자 수) 및 퇴직자(자연감소) 정원분을 행정·기술직군 전직예정직렬 정원에 반영하고, 기술직군 전직예정 직렬의 계급별 초과현원 해소 및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표기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효율적 정원관리 도모

3. 주요내용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 개정

가. 총정원 증원 : 1,149명 【변동없음】

나.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5명) 정원분을 전직예정직렬 정원으로 조정

1) 조정기준(특례지침)

구 분	관리운영직군 정원 (전직시험 합격자)	▶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 정원 (전직예정직렬)
정원조정	현직급의 정원 감원 (단, 근속승진자는 전직급 정원 감원)		합격자의 현재계급 고려, 그에 해당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으로 증원

2)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5명(필기운영7급 1, 필기운영8급 3, 전기운영8급 1)

나) 대상별 조정내역

필기운영	4명(8급 1명, 9급 3명) 감원	▶	행정	4명(7급 1명, 8급 3명) 증원
전기운영	1명(8급 1명) 감원	▶	공업(전기)	1명(8급 1명) 증원

① 필기운영 7급 1명(근속 3회) : 필기운영 9급 1명 감원 → 행정 7급 1명 증원

② 필기운영 8급 3명(2명 각 근속 1회) : 필기운영 8급 1명 감원 → 행정 8급 1명 증원
필기운영 9급 2명 감원 → 행정 8급 2명 증원

③ 전기운영 8급 1명 : 필기운영 9급 1명 감원 → 행정 7급 1명 증원

다.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퇴직) 정원분(1명)을 신규임용 예정직렬에 반영

1) 조정기준(특례지침)

구 분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	▶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 정원 (신규임용예정직렬)
정원조정	현직급의 정원 감원 (단, 근속승진자는 전직급 정원 감원)		신규임용 예정직급의 정원으로 증원

2)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1명(필기운영7급 1, 근속)

나) 조정내역

필기운영	8급 1명 감원	▶	행정	9급 1명 증원

라. 기술직군 전직대상직렬의 계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조정

1) 전직대상직렬 정·현원 현황

구 분	합 계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근속)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업(전기)	16	15	3	4	5	9	6	2	2	0
공업(기계)	14	12	3	4	4	6(1)	5	1	2	1

2) 조정기준(특례지침) : 초과현원인 상태로 전직임용한 경우 정·현원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 ※ 전직자 퇴직 시엔 정원 재조정

3)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5명(전기6급 1, 전기7급 4, 기계7급 1)

나) 대상별 조정내역

공업(전기)	5명(9급 1명, 8급 4명) 감원	▶	5명(6급 1명, 7급 4명) 증원
공업(기계)	1명(8급) 감원	▶	1명(7급) 증원

※ 공업(기계) 6급 정·현원 차이분(△1)은 현원감소 예정분('17.1.1.字 공로연수 2명)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마.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표기 표준에 맞게 정비

1) 표기표준 근거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1항 [별표1]「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5호 및 제30조(정원의 규정) 제3항

2) 정비내용

가) 정원표 직렬표기 순서를 '임용령 직급표'의 '직렬표기 순서'에 맞게 정비

표기순서	[행정직군] 행정 → 세무 → 전산 → 사회복지 → 속기 → 방호 [기술직군] 공업 → 농업 → 녹지 → 수의 → 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의무 → 약무 → 간호 → 보건진료 → 환경 → 시설 → 방재안전 → 방송통신 → 위생 → 시설관리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 → 전기운영 → 기계운영 → 사무운영

나) 직렬이 아닌 '일반 임기제' 표기 삭제 → 결원대상 직렬로 재조정

현행	**행정·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치과의사) **행정 또는 임기제**(감사, 법무소송, 학예연구, 프로듀서, 언론홍보요원, 아나운서, 사진촬영, 기록물관리, 외국인주민)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의사, 한방의사)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식품위생 또는 임기제**(영양사)	▶	조정	**행정 또는 의무** **의무** **행정** **보건진료** **시설** **의료기술** **식품위생**

- 임기제공무원 정원분 별도 관리

> **정원 규정 제22조제1항5호**
>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임기제'교통전문' 분야 대상직렬을 '행정직'에서 '시설직'으로 변경
  · 변경사유 : 해당분야 업무성격 및 자치구 공통기준에 맞게 조정

4. 정원조정(안) 세부내역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2. 17. ~ 2016. 1. 6.(20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3) 규제사무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49	809	23	104	213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44	806	21	104	213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기관	4	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6	29	2	10	15
행정	**18**	**18**			
의무	**5**			**5**	
시설	3	3			
행정 또는 사회복지	18	3			15
행정.공업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보건	2			2	
행정 또는 의무	1			1	
행정 또는 시설	3	3			
행정 또는 별정	2		2		
의무 또는 약무	1			1	
보건·의무 또는 간호	1			1	
~~행정·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			-	
~~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			-	
~~의무 또는 임기제(치과의사)~~	-			-	
~~행정 또는 임기제(감사)~~	-	-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213	159	5	19	30
행정	120	97	3	5	15
속기	1		1		
공업	8	8			
의료기술	3			3	
약무	1			1	
간호	3			3	
보건진료	2			2	
시설	12	12			
운전	4	4			
행정 또는 세무	12	1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전산 또는 통신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23	8			15
행정 또는 공업	1	1			
행정·공업·보건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또는 약무	1			1	
행정 또는 시설	8	8			
행정 또는 별정	1		1		
공업·환경 또는 보건	2	2			
보건 또는 간호	3			3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한방의사)~~	-			-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의사)~~	-			-	
~~행정 또는 임기제(법무소송)~~	-	-			
~~행정 또는 임기제(학예연구)~~	-	-			
기계운영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7급 소계	343	260	5	23	55
행정	178	127	4	4	43
세무	25	25			
전산	2	2			
사회복지	19	7			12
속기	1		1		
방호	3	3			
공업	16	16			
농업	1	1			
녹지	4	4			
수의	1	1			
보건	4			4	
식품위생	1	-		1	
의료기술	2			2	
약무	2			2	
간호	9			9	
환경	3	3			
시설	31	3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6	6			
운전	18	18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	-			
~~행정 또는 임기제(프로듀서)~~	-	-			
~~행정 또는 임기제(언론홍보요원)~~	-	-			
~~행정 또는 임기제(아나운서)~~	-	-			
~~행정 또는 임기제(사진촬영)~~	-	-			
~~행정 또는 임기제(기록물관리)~~	-	-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2	1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8급 소계	327	212	5	36	74
행정	139	87	4	2	46
세무	18	18			
전산	2	2			
사회복지	20	7			13
속기	1		1		
방호	3	3			
공업	11	11			
녹지	4	4			
보건	11	1		10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8			8	
간호	11			11	
환경	1	1			
시설	28	28			
방송통신	2	2			
위생	2	2			
시설관리	8	7		1	
운전	36	21			15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			-	
~~식품위생 또는 임기제(영양사)~~	-			-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운동처방사)~~	-			-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	-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5	5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2	10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9급 소계	195	138	3	15	39
행정	94	65	1	4	24
세무	12	12			
사회복지	26	11			15
전산	4	4			
방호	4	3	1		
공업	3	3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3			3	
시설	16	1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위생	2	1		1	
시설관리	3	3			
운전	22	16	1	5	
~~행정 또는 임기제(외국인주민)~~	-	-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			-	
사무운영	-	-	-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소계	2	2			
화생방	2	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49	809	23	104	213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44	806	21	104	213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기관	4	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6	29	2	10	15
행정	**17**	**17**			
				(신	**설)**
시설	3	3			
행정 또는 사회복지	18	3			15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환경 또는 공업	1	1			
행정 또는 보건	2			2	
				(신	**설)**
행정 또는 시설	3	3			
행정 또는 별정	2		2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간호 또는 보건	1			1	
행정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1			1	
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4**			**4**	
의무 또는 임기제(치과의사)	**1**			**1**	
행정 또는 임기제(감사)	**1**	**1**			

개 정 안

[별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49	809	23	104	213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44	806	21	104	213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기관	4	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6	29	2	10	15
행정	18	18			
의무	5			5	
시설	3	3			
행정 또는 사회복지	18	3			15
행정.공업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1	1			
행정 또는 보건	2			2	
행정 또는 의무	1			1	
행정 또는 시설	3	3			
행정 또는 별정	2		2		
의무 또는 약무	1			1	
보건·의무 또는 간호	1			1	
~~행정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			-	
~~의무 또는 임기제(의사)~~	-			-	
~~의무 또는 임기제(치과의사)~~	-			-	
~~행정 또는 임기제(감사)~~	-	-			

현 행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212**	**158**	5	19	30
행정	**118**	95	3	5	15
속기	1		1		
공업	7	7			
의료기술	3			3	
약무	1			1	
간호	3			3	
				(신 설)	
시설	12	12			
운전	4	4			
행정 또는 세무	12	12			
행정 또는 사회복지	23	8			15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 또는 공업	1	1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 또는 시설	8	8			
간호 또는 보건	3			3	
행정 또는 별정	1		1		
행정·전산 또는 통신	1	1			
행정·보건 또는 수의	1			1	
공업·환경 또는 보건	2	2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1	1			
행정·약무·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한방의사)	**1**			**1**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의사)	**1**			**1**	
행정 또는 임기제(법무소송)	**1**	**1**			
행정 또는 임기제(학예연구)	**1**	**1**			
기계운영	1	1			

개 정 안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213	159	5	19	30
행정	120	97	3	5	15
속기	1		1		
공업	8	8			
의료기술	3			3	
약무	1			1	
간호	3			3	
보건진료	2			2	
시설	12	12			
운전	4	4			
행정 또는 세무	12	12			
행정 또는 전산	1	1			
행정·전산 또는 통신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23	8			15
행정 또는 공업	1	1			
행정·공업·보건 또는 환경	1	1			
행정 또는 녹지	3	3			
행정·수의 또는 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또는 약무	1			1	
행정 또는 시설	8	8			
행정 또는 별정	1		1		
공업·환경 또는 보건	2	2			
보건 또는 간호	3			3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한방의사)~~	-			-	
~~보건진료 또는 임기제(의사)~~	-			-	
~~행정 또는 임기제(법무소송)~~	-	-			
~~행정 또는 임기제(학예연구)~~	-	-			
기계운영	1	1			

현 행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7급 소계	**337**	**255**	**4**	23	55
행정	**172**	**122**	**3**	4	43
세무	25	25			
사회복지	19	7			12
전산	2	2			
속기	1		1		
방호(경비)	3	3			
공업	**11**	**11**			
녹지	4	4			
농업	1	1			
수의	1	1			
보건	4			4	
식품위생	1	-		1	
의료기술	2			2	
약무	2			2	
간호	9			9	
환경	3	3			
시설	**29**	**29**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6	6			
운전	18	18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2**	**2**			
행정 또는 임기제(프로듀서)	**1**	**1**			
행정 또는 임기제(언론홍보요원)	**1**	**1**			
행정 또는 임기제(아나운서)	**1**	**1**			
행정 또는 임기제(사진촬영)	**1**	**1**			
행정 또는 임기제(기록물관리)	**1**	**1**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필기운영)	12	12			

개 정 안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7급 소계	343	260	5	23	55
행정	178	127	4	4	43
세무	25	25			
전산	2	2			
사회복지	19	7			12
속기	1		1		
방호	3	3			
공업	16	16			
농업	1	1			
녹지	4	4			
수의	1	1			
보건	4			4	
식품위생	1	-		1	
의료기술	2			2	
약무	2			2	
간호	9			9	
환경	3	3			
시설	31	3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6	6			
운전	18	18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	-			
~~행정 또는 임기제(프로듀서)~~	-	-			
~~행정 또는 임기제(언론홍보요원)~~	-	-			
~~행정 또는 임기제(아나운서)~~	-	-			
~~행정 또는 임기제(사진촬영)~~	-	-			
~~행정 또는 임기제(기록물관리)~~	-	-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2	12			

현 행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8급 소계	**331**	**217**	**4**	36	74
행정	**136**	**85**	**3**	2	46
세무	18	18			
사회복지	20	7			13
전산	2	2			
속기	1		1		
방호(경비)	3	3			
공업	**15**	**15**			
녹지	4	4			
보건	11	1		10	
				(신	**설)**
의료기술	**5**			**5**	
간호	11			11	
환경	1	1			
시설	**27**	**27**			
방송통신	2	2			
위생	2	2			
시설관리	8	7		1	
운전	36	21			15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1**			**1**	
식품위생 또는 임기제(영양사)	**2**			**2**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물리치료사)	**1**			**1**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운동처방사)	**1**			**1**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6	6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필기운영)	14	12		2	

개 정 안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8급 소계	327	212	5	36	74
행정	139	87	4	2	46
세무	18	18			
전산	2	2			
사회복지	20	7			13
속기	1		1		
방호	3	3			
공업	11	11			
녹지	4	4			
보건	11	1		10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8			8	
간호	11			11	
환경	1	1			
시설	28	28			
방송통신	2	2			
위생	2	2			
시설관리	8	7		1	
운전	36	21			15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			-	
~~식품위생 또는 임기제(영양사)~~	-			-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운동처방사)~~	-			-	
~~행정 또는 임기제(교통전문)~~	-	-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5	5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2	10		2	

현 행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9급 소계	**198**	**139**	**5**	15	39
행정	**92**	**63**	1	4	24
세무	12	12			
사회복지	26	11			15
전산	4	4			
방호(경비)	4	3	1		
공업	**4**	**4**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시설	16	1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위생	2	1		1	
시설관리	3	3			
운전	22	16	1	5	
행정 또는 임기제(외국인주민)	**1**	**1**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1**			**1**	
사무운영(필기운영)	**3**	**1**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소계	2	2			
화생방	2	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개 정 안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9급 소계	**195**	**138**	**3**	15	39
행정	**94**	**65**	1	4	24
세무	12	12			
사회복지	26	11			15
전산	4	4			
방호	4	3	1		
공업	**3**	**3**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3**			**3**	
시설	16	1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위생	2	1		1	
시설관리	3	3			
운전	22	16	1	5	
행정 또는 임기제(외국인주민)	-	-			
의료기술 또는 임기제(치과위생사)	-			-	
사무운영	-	-	-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소계	2	2			
화생방	2	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운영직군 대상, 2015년 전직시험 결과(합격자 수) 및 퇴직자(자연감소) 정원분을 행정 · 기술직군 전직예정직렬 정원에 반영하고, 기술직군 전직예정직렬의 계급별 초과현원 해소 및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표기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효율적 정원관리 도모

2. 주요내용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개정

가.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5명) 정원분을 전직예정직렬 정원으로 조정

1) 조정기준(특례지침)

구　분	관리운영직군 정원 (전직시험 합격자)	▶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 정원 (전직예정직렬)
정원조정	현직급의 정원 감원 (단, 근속승진자는 전직급 정원 감원)		합격자의 현재계급 고려, 그에 해당하는 전직예정 직급의 정원으로 증원

2)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5명(필기운영7급 1, 필기운영8급 3, 전기운영8급 1)

나) 대상별 조정내역

필기운영	4명(8급 1명, 9급 3명) 감원	▶	행정	4명(7급 1명, 8급 3명) 증원
전기운영	1명(8급 1명) 감원	▶	공업(전기)	1명(8급 1명) 증원

나.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퇴직) 정원분(1명)을 신규임용 예정직렬에 반영

1) 조정기준(특례지침)

구 분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	▶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 정원 (신규임용예정직렬)
정원조정	현직급의 정원 감원 (단, 근속승진자는 전직급 정원 감원)		신규임용 예정직급의 정원으로 증원

2) 조정내용

필기운영	8급 1명 감원	▶	행정	9급 1명 증원

다. 기술직군 전직대상직렬의 계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조정

1) 조정기준(특례지침) : 초과현원인 상태로 전직임용한 경우 정·현원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

2) 조정내용

가) 조정대상 : 총 5명(전기6급 1, 전기7급 4, 기계7급 1)

나) 대상별 조정내역

공업(전기)	5명(9급 1명, 8급 4명) 감원	▶	5명(6급 1명, 7급 4명) 증원
공업(기계)	1명(8급) 감원	▶	1명(7급) 증원

라.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표기 표준에 맞게 정비

1) 정원표 직렬표기 순서를‘임용령 직급표’의‘직렬표기 순서’에 맞게 정비

2) 직렬이 아닌 ‘일반 임기제’ 표기 삭제 → 결원대상 직렬로 재조정

※ 표기표준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1항 [별표1]「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5호 및 제30조(정원의 규정)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justl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